Sunshine GWANGYANG
광 양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0호 2023. 5. 17.(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16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1084호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
광양시 공고 제2023-1091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 9
광양시 공고 제2023-1110호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광양시 공고 제2023-1137호 『매천황현생가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공고 ····· 30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36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 ····· 33

회람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고시 제 2023 - 163 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3길 32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5. 17.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2-1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3길 32	20230517	20160127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10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2길 17 (광영동)	20230517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공고 제2023-1084호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전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중교통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비 지원체계 구축,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지원절차에 관항 사항

○ 교통카드 지원중단 관한 사항

○ 대중교통비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5. 10. ~ 5. 31.(21일간)

○ 예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5. 조례 제정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 전화: 061-797-3366, FAX: 061-797-2591, E-mail: hrthyb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조례 제정안**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

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

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고 제 2023 - 1091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5월 25일(목)까지 광양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3. 5. 11. ~ 2023. 5. 25. (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4척(아래와 같음)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3 - 1091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중동 1806번지 일원(해양경찰서 앞)			
선박 제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2 톤 (추정)
	주요치수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3-1
제거 예정일자	2023년 5월 2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5월 25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3 - 1091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 colspan="2">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마동 1129번지 일원(와우포구)</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 colspan="2">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 colspan="2">약 2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 colspan="2">광양시</td><td>관 리 번 호</td><td>광양시 2023-2</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4">2023년 5월 2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4">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5">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5월 25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3 - 1091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광영동 656-7번지 일원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2 톤 (추정)
	주요치수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3-3
제거 예정일자	2023년 5월 2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5월 25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3 - 1091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광영동 656-7번지 일원</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약 1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 colspan="2">광양시</td><td>관 리 번 호 | 광양시 2023-4</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3">2023년 5월 2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3">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3">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3">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4">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5월 25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2023-1110호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청구인 나이를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있는 나이로 설정하고,

○ 청구인 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구 요건(안 제4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 청구인 나이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인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별지 서식 신설

나. 청구 대상(안 제5조 제5호)　　* 정책 토론 제외 사항

○ 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

→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한 사항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5. 18. ~ 2023. 6. 7.(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2) 전화 : 061-797-2384

3) 팩스 : 061-797-2574

4) 전자우편 : aksusumi@korea.kr

7.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기획예산실(061-797-238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조례 제 호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청구주민 수 등)”을 “(청구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9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재판 중에 있거나”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회를”을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여부”를 “개최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를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기존의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기존의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 )정책토론청구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정책토론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정책토론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정책토론청구대상을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 정책토론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일자	서 명 또는 날 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 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 란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 ) 정책토론의 청구인대표자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서명부 등을 작성한다.
2. 본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정책토론청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4. 본인은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서 제출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5">※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h colspan="4">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th></tr>
<tr><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정책토론
청구요지</td><td colspan="3"></td></tr>
<tr><td>서명요청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4">위 사람은「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정책토론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td></tr>
<tr><td colspan="4">참고 : 정책토론청구 요지란에는 정책토론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구주민 수 등) ① 토론회 개최 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청구요건**) ① ----------**18세 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제5호서식의** ----------.
제5조(청구대상) 정책토론 청구 대상은 시의 행정·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 4. (생 략) 5. 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	제5조(청구대상)----------. 1. (현행과 같음)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3. ~ 4. (현행과 같음) 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1.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토론청구 요건 3. 토론회 개최여부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인, 교육자 또는 언론인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삭 제)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 제)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삭 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현 행	개 정 안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개최 및 방법) (생 략) 제9조(결과통지 · 공표) (생 략) 제10조(업무분담)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광양시 공고 제2023-1137호

『매천황현생가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매천황현생가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량이나 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광 양 시 박양균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94-1

나. 사업명칭 : 『매천황현생가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기간 : 2023. 05. ~ 2024. 6.

라.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현장조사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광양시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94-1, 632㎡ (편입토지조서 별첨)

나. 물건 : 위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 등 일체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첨

3. 현장조사 연기 신청 및 이의 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5. 17. ~ 2023. 5. 24.

나. 현장조사 : 2023. 5. 19. ~ 2023. 5. 24.

다. 조사장소 :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061-797-2419)

라. 조사원의 성명: 붙임 허가증 참조

바. 조사연기 및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현장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붙임 이의신청서 , 조사 연기신청서)**으로 열람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바. 조치 : 1)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내용 통보
2)조사연기 신청자에게는 일정 개별협의

사.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5. 측량 조사 시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1)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2)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수 없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4)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음

6. 장애물제거 등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1)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기타사항

가. 현장조사를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061-797-2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1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6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여비조례」제2조제3항”을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광양시 여비조례”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여비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광양시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제3항----------.
제2조(지급대상)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2. (생 략) 3. 운전원	제2조(지급대상)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준용규정) 여비지급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